인천광역시 중구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결	기 관 의 장

구 보

제 1364 호

2023년 9월 27일 수요일

차 례

조 례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618호 (인천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3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619호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 6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620호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 10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621호 (인천광역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 19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622호 (인천광역시 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2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623호 (인천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25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624호 (인천광역시 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30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625호 (인천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3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626호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조례) ····· 39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627호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44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628호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50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629호 (인천광역시 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53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630호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 56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631호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61

회람								

발행 : 인천광역시 중구 편집 : 홍보체육실

규 칙

○인천광역시중구규칙 제1031호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66

훈 령

○인천광역시중구훈령 제407호 (인천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동협의회 운영 규정) ····· 73

예 규

○인천광역시중구예규 제107호 (인천광역시 중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 76

고 시

○인천광역시중구고시 제2023-22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제2023-228호)) ····· 110

공 고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23-1518호 (빈집 해체 명령 공고) ····· 111

조 례

❑ 제 명 : 인천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사유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보고 과정을 ‘연 2회 이상’으로 수정하여 공모사업 운영의 체계성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 횟수 수정(제6조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정 헌

2023년 9월 27일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1618호

인천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1회”를 “2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회 보고) ① (생 략) ② 구청장은 제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6조(의회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2회 ----------. ③ (현행과 같음)

□ 제　　명 :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사유

「공무원 여비 규정」이 2023.03.02.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여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필요한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2에 따라 지급한다”를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경우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로 변경

나. [별표 2] 공무 국내여행의 운임 및 숙박비 지급표 삭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정 헌

2023년 9월 27일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1619호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공무원 여비 규정」”을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 여비 규정」”을 “영”으로 한다.

제4조 중 “국내여행을 할 때 필요한”을 “국내여행을 할 경우”로, “별표 2”를 “영 별표 2의 기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영”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 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의 여비는 직급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② ---------- 영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필요한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국내여행을 할 경우 ----------영 별표 2의 기준---------.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1. ~ 10. (생 략)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영------. 1. ~ 10. (현행과 같음)

신・구별표대비표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

[별표 2]

공무 국내여행의 운임 및 숙박비 지급표(제4조 관련)

(단위 : 원)

<table>
<tr><th>구분</th><th>철도
운임</th><th>선박
운임</th><th>항공
운임</th><th>자동차
운임</th><th>숙박비
(1박당)</th></tr>
<tr><td>제1호</td><td>실비
(특실)</td><td>실비
(1등급)</td><td>실비</td><td>실비</td><td>실비</td></tr>
<tr><td>제2호</td><td>실비
(일반실)</td><td>실비
(2등급)</td><td>실비</td><td>실비</td><td>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td></tr>
</table>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td><td>

[별표 2] <삭 제>

</td></tr>
</table>

□ 제　　명 :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 제정사유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줄 수 있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구민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제1조~제2조)

나. 책무(제3조)

다. 지원계획(제4조)

라.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제5조~제6조)

마. 실태조사(제7조)

바. 지원신청 등(제8조)

사. 지원결정 취소 등(제9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정 헌

2023년 9월 27일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1620호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落雷),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추진시책의 마련
2. 추진시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한 주민 의견수렴 및 반영
3. 추진시책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위험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모든 구민은 생활주변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도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위험수목을 발견하면 신고하는 등 구의 추진시책에 협조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목표·방향 및 절차
2. 추진 기간, 수요조사 방법
3.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해 관련기관·전문업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인 대형 수목으로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의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이거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가 예상되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 병충해 피해 등으로 쓰러질 우려가 있고, 해당 수목이 쓰러질 경우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 모양이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②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시행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 등 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범위) ① 제5조에 따른 생활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지는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또는 노유자시설인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원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관리해야 하는 지역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는 등의 공동주택)
3.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4.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수목을 관리하는 지역
5. 인위적 수목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6.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은 대상지는 2년 이내에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③ 위험수목이 「건축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 등 관련 법규 및 인허가조건 등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에 있는 경우 관련법에 따른 적합한 보완식재 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정비 대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는 별표 1 위험성 평가 및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 이 곤란할 경우「산림보호법」 제2조제6호의5에 따른 수목전문가(나무병원 등)에게 위험성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전원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신청자 및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결정 취소 등) 구청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신청한 경우
2. 위험수목 처리 중 반대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위험성 평가 및 등급 기준 (제7조 관련)

도복/부러짐 가능성	대상물체[1]의 피해 가능성			
	매우 낮음	낮음	중간	높음
발생임박	보통	보통	높음	매우높음
발생농후	낮음	보통	보통	높음
발생가능	낮음	낮음	보통	보통
발생불가	낮음	낮음	낮음	낮음

지원대상 (위험등급 수준)	처리 내용
낮음(경)	지원 불가대상 (소유자의 모니터링 권고)
보통(중)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 결정
높음(심)	처리 대상으로 처리 시기 유동적으로 적용 가능
매우높음(극심)	즉시 처리 대상

○ 대상물체의 피해 가능성 판단 세부 기준

[위험대상구역 : 위험목을 중심으로 수고의 1.5배 반경 내로 한다.]

- 매우낮음 : 피해대상 물체가 없는 한적한 지역으로 통행량도 거의 없음.
- 낮 음 : 제한적 도로, 도로로 넘어질 우려가 없어 피해 가능성 낮음.
- 중 간 : 도복 수목, 가지 일부가 대상물체에 피해를 줄 수 있고 피해점유율이 빈번한 지역
- 높 음 : 도복 수목, 가지 대부분이 대상물체에 피해를 줄 수 있고 완전히 피해에 대상물체가 노출되어 있으며, 도로나 인도에 위치해 2차 피해 우려 지역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연구자료 제844호, 제2020년 발행) “생활권 수목의 위험성 평가 가이드라인-6.위험등급 구분” 준용

1) 대상물체 : 이동성(보행자, 자동차, 이륜차, 자전거 등), 이동가능성(조형물, 게시판, 야외 탁자, 주차차량, 놀이터 시설 등), 고정성(건물, 공익시설, 구조물 등)으로 분류한다.

[별지 제1호서식]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

<table>
<tr><td rowspan="2">지원대상지</td><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소 유 자</td><td></td><td>연 락 처</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신 청 인</td><td>주 소</td><td colspan="5"></td></tr>
<tr><td>성 명</td><td></td><td>연 락 처</td><td colspan="3"></td></tr>
<tr><td>신 청 사 유</td><td colspan="6"></td></tr>
<tr><td rowspan="7">대 상 수 목</td><td>연번</td><td>나무종류</td><td>나무높이(m)</td><td>가슴높이지름(cm)</td><td>지원내용</td><td>비 고</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6">※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td></tr>
<tr><td>기 타
요 구 사 항</td><td colspan="6"></td></tr>
</table>

상기와 같이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붙 임 대상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1호 붙임서식]

대상위치도 및 현황사진

위 치 도	
전경사진	근경사진

[별지 제2호서식]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

○ **수 목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 **수종 및 수량** :

○ **정 비 사 유** :

○ **정 비 내 용** :

상기 본인은 인천광역시 중구 _____소유주로 여름철 태풍, 폭우시 전도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아래 수목에 대하여 정비(제거, 가지치기 등)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소 유 자 : (인)

연 락 처 :

붙 임 공동소유자 동의서 1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붙 임]

공동소유자 동의서

□ 공동소유자 동의(전원이 동의하여야 합니다.)

연번	성명	주소(동 호수 명기)	서명(인)	비고
1				
2				
3				
4				
5				
6				
7				
8				
9				
10				

상기와 같이 수목 정비(제거, 가지치기) 신청을 위한 공동소유자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제　　명 : 인천광역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 제정사유

저장강박은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저장하는 행동장애의 일종으로서, 주민의 건강 및 복리를 저하시키고 이웃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침해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므로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방안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제3조)

다. 적용범위(제4조)

라.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제5조~제6조)

마. 자원봉사자 지원(제7조)

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제8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정 헌

2023년 9월 27일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1621호

인천광역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 및 이웃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적용한다.

제5조(지원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6.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제6조(지원 내용)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2.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3.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제7조(자원봉사자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센터 또는 관련 사회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　　명 : 인천광역시 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사유

스토킹범죄 2차 피해 방지대책 마련과 2차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증진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제2조제4호)

나. 2차 피해 방지 조항 신설(제8조의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정 헌

2023년 9월 27일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1622호

인천광역시 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2차 피해 방지)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시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 1. ~ 3. (현행과 같음) 4.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신 설>	제8조의2(2차 피해 방지)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시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　　명 : 인천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사유

「양성평등기본법」을 근거로 「인천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양성평등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조항 신설(제5조)

나.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조문 개정(제6조~제7조)

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문장 정비(제7조, 제24조, 제29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정 헌

2023년 9월 27일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1623호

인천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양성평등 시행계획 수립과 추진체계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기초로 하여 연도별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 현황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앞에 "제2장 양성평등위원회"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자문·심의하기"를 "심의·조정하기"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기능을 대신하거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한다”를 “심의ㆍ조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필요하여 자문 및 심의를 요구하는”을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호선한다”를 “서로 뽑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중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24조 중 “「양성평등기본법」제38조”를 “법 제38조”로 한다.

제29조 중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남녀평등”을 “남녀평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장 양성평등 시행계획 수립과 추진체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기초로 하여 연도별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 현황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신 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양성평등위원회	<삭 제>
제6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서 신설>	제6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 심의·조정하기 ----------.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기능을 대신하거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② ---------- 심의·조정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 및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4. ----------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서로 뽑는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국제도시행정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서 신설>	③ ----------.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생 략)	제8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 한다.
제24조(양성평등주간)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양성평등주간) ---- 법 제38조 ----------.
제29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복지증진과 능력개발·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9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 ---- 남녀평등----------.

□ 제　　명 : 인천광역시 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정사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 및 인천광역시 중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제1조～제3조)

나. 활성화계획 수립(제4조)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제5조)

라. 공유재산 임대 등(제6조)

마. 홍보 등(제7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정 헌

2023년 9월 27일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1624호

인천광역시 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 및 인천광역시 중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기본 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지원 계획
3. 충전시설 등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일정 기간 이상 인천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하고,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공유재산 임대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제7조(홍보 등)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 명 : 인천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사유

가.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2431(2020. 7. 6.,"「액화석유가스사업자 허가요건 관련 규제개선」 건의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요청")호 관련, 과도한 규제로 개선 건의 받은 액화석유가스사업자의 자본금 확보 관련 조항 수정코자 함

나.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된 조문 번호 현행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액화석유가스사업자 허가기준 중 3억원 이상 자본금 확보 등 불합리한 규제 조항 수정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2431)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된 조문 번호 현행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정 헌

2023년 9월 27일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1625호

인천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제4항, 제4조제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5항, 제6조제3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3조”를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5호”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법 제3조”를 “법 제5조”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세부적인 허가요건

사업종류	허 가 요 건 등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1. 허가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소방기본법」, 「건축법」, 「도시개발법」등 기타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2.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거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별표4】제1호가목1)의 다),라)의(1),마)의(1)에서 정한 안전거리의 2배를 적용한다. 3. 저장설비는 지하에, 기계실 및 충전설비는 지상에 설치하되 저장설비 저장능력은 20톤을 초과하여야 한다. 4. 토지 및 시설은 임대도 가능하며 소유자로부터 공증된 사용승낙서를 받을 것. 5.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폭이 16m 이상, 도로일면의 길이가 20m 이상 도로에 접할 것. 다만, 영종·용유지역의 경우 도로폭이 8m 이상, 부지일면의 길이가 20m 이상 도로에 접할 것. 6.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 대상에 적용하며, 변경허가 대상 중 저장설비 및 충전시설 등의 노후로 인하여 증설 없이 변경 시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7. 사업개시 이전에는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허가자가 사망, 이민, 신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영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허가요건이 완비되었다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조건부여 또는 허가 제한을 할 수 있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1. 허가지역을 전용, 일반, 준 공업지역으로 하고 기존 허가업소가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도 가능하며, 「소방기본법」, 「건축법」,「도시개발법」등 기타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2. 용기보관실은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액화석유가스 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제3호【별표6】제1호가목1)가)·2)다)·5)가)·5)나에서 정한 안전거리의 2배를 유지할 것. 3. 시설부지는 도로폭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하며, 부지면적은 최소 600㎡ 이상이어야 하며, 용기보관실은 120㎡ 이상, 사무실 30㎡ 이상, 주차장 400㎡ 이상을 확보할 것. 4. 용기보관실 외면으로부터 「주택법」 제15조에 의한 사업승인을 득한 공동주택(대지를 접하여 건축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포함 한다)까지 최단 직선거리 50m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1종 보호시설을 포함한 건축물에는 설치할 수 없다. 5. 업소상호간의 거리는 타 구의 판매업소를 포함하여 용기보관실 외벽기준 500m 유지할 것. 다만 기존 업소가 이전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호간의 거리란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판매소 등과의 거리를 말한다. 6. 용기보관실은 차량에서 용기를 상·하차시 용이하도록 차량적재함 높이에 맞추어야 하며, 사무실과 동일부지내 있어야 한다. 7. 용기보관실의 용도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용도변경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선 허가 후 사업개시 전까지 용도를 변경하여도 된다) 8. 허가요건이 완비되었다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조건부여 또는 허가 제한을 할 수 있다. 9. 토지 및 시설은 임대도 가능하며 소유자로부터 공증된 사용승낙서를 받을 것.
가스용품 제조사업	1. 사업소의 부지 및 시설은 자가 소유 또는 임차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 경우는 공증된 사용 승낙서가 있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1.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할 것 2. 사업소의 부지 및 시설은 자가 소유 또는 임차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 경우는 공증된 사용 승낙서가 있어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제4항, 제4조제2항,「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5항, 제6조제3항,「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1. ---------- 제5조----------.
2. "보호시설"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15호에 정한 것을 말한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16호----------.
제3조(적용범위) 법 제3조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 변경 시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 제5조----------. ----------.

신・구별표대비표

현 행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세부적인 허가요건

사업종류	허 가 요 건 등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1. 허가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건축법」, 「도시개발법」 등 기타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2.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 탱크로리 이입 · 충전장소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거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호 【별표3】 제1호 가목 1)의 (다),(라),(마)에서 정한 안전거리의 2배를 적용한다. 3. 저장설비는 지하에, 기계실 및 충전설비는 지상에 설치하되 저장설비 저장능력은 20톤을 초과하여야 한다. 4. 토지 및 시설은 임대도 가능하며 소유자로부터 공증된 사용승낙서를 받을 것. 5. 차량의 원활한 진 · 출입을 위하여 도로폭이 16m 이상, 도로일면의 길이가 20m 이상 도로에 접할 것. 다만, 영종 · 용유지역의 경우 도로폭이 8m 이상, 부지일면의 길이가 20m 이상 도로에 접할 것. 6.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 대상에 적용하며, 변경허가 대상 중 저장설비 및 충전시설 등의 노후로 인하여 증설 없이 변경 시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7. 사업개시 이전에는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허가자가 사망, 이민, 신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영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허가요건이 완비되었다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조건부여 또는 허가 제한을 할 수 있다.

사업종류	허 가 요 건 등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1. 허가지역을 전용, 일반, 준 공업지역으로 하고 기존 허가업소가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도 가능하며, 「소방기본법」, 「건축법」, 「도시개발법」 등 기타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2. 용기보관실은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액화석유가스 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6】에서 정한 안전거리의 2배를 유지할 것. 3. 시설부지는 도로폭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하며, 부지면적은 최소 600㎡ 이상이어야 하며, 용기보관실은 120㎡ 이상, 사무실 30㎡ 이상, 주차장 400㎡ 이상을 확보할 것. 4. 용기보관실 외면으로부터 「주택법」 제15조에 의한 사업승인을 득한 공동주택(대지를 접하여 건축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포함 한다)까지 최단 직선거리 50m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1종 보호시설을 포함한 건축물에는 설치할 수 없다. 5. 업소상호간의 거리는 타 구의 판매업소를 포함하여 용기보관실 외벽 기준 500m 유지할 것. 다만 기존 업소가 이전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호간의 거리란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판매소 등과의 거리를 말한다. 6. 용기보관실은 차량에서 용기를 상 · 하차시 용이하도록 차량적재함 높이에 맞추어야 하며, 사무실과 동일부지내 있어야 한다. 7. 용기보관실의 용도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용도변경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선 허가 후 사업개시 전까지 용도를 변경하여도 된다) 8. 허가요건이 완비되었다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조건부여 또는 허가 제한을 할 수 있다. 9. 토지 및 시설은 임대도 가능하며 소유자로부터 공증된 사용승낙서를 받을 것.

개 정 안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세부적인 허가요건

사업종류	허 가 요 건 등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1. 허가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건축법」, 「도시개발법」 등 기타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2.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 탱크로리 이입 · 충전장소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거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별표4】 제1호가목1)의 다),라)의(1),마)의(1)에서 정한 안전거리의 2배를 적용한다. 3. 저장설비는 지하에, 기계실 및 충전설비는 지상에 설치하되 저장설비 저장능력은 20톤을 초과하여야 한다. 4. 토지 및 시설은 임대도 가능하며 소유자로부터 공증된 사용승낙서를 받을 것. 5. 차량의 원활한 진 · 출입을 위하여 도로폭이 16m 이상, 도로일면의 길이가 20m 이상 도로에 접할 것. 다만, 영종 · 용유지역의 경우 도로폭이 8m 이상, 부지일면의 길이가 20m 이상 도로에 접할 것. 6.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 대상에 적용하며, 변경허가 대상 중 저장설비 및 충전시설 등의 노후로 인하여 증설 없이 변경 시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7. 사업개시 이전에는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허가자가 사망, 이민, 신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영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허가요건이 완비되었다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조건부여 또는 허가 제한을 할 수 있다.

사업종류	허 가 요 건 등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1. 허가지역을 전용, 일반, 준 공업지역으로 하고 기존 허가업소가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도 가능하며, 「소방기본법」, 「건축법」, 「도시개발법」 등 기타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2. 용기보관실은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액화석유가스 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 【별표6】 제1호가목1)가) · 2)다) · 5)가) · 5)나)에서 정한 안전거리의 2배를 유지할 것. 3. 시설부지는 도로폭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하며, 부지면적은 최소 600㎡ 이상이어야 하며, 용기보관실은 120㎡ 이상, 사무실 30㎡ 이상, 주차장 400㎡ 이상을 확보할 것. 4. 용기보관실 외면으로부터 「주택법」 제15조에 의한 사업승인을 득한 공동주택(대지를 접하여 건축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포함 한다)까지 최단 직선거리 50m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1종 보호시설을 포함한 건축물에는 설치할 수 없다. 5. 업소상호간의 거리는 타 구의 판매업소를 포함하여 용기보관실 외벽 기준 500m 유지할 것. 다만 기존 업소가 이전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호간의 거리란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판매소 등과의 거리를 말한다. 6. 용기보관실은 차량에서 용기를 상 · 하차시 용이하도록 차량적재함 높이에 맞추어야 하며, 사무실과 동일부지내 있어야 한다. 7. 용기보관실의 용도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용도변경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선 허가 후 사업개시 전까지 용도를 변경하여도 된다) 8. 허가요건이 완비되었다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조건부여 또는 허가 제한을 할 수 있다. 9. 토지 및 시설은 임대도 가능하며 소유자로부터 공증된 사용승낙서를 받을 것.

현 행		개 정 안	
사업종류	허 가 요 건 등	사업종류	허 가 요 건 등
가스용품 제조사업	1. 가스용품제조의 원활한 운용을 할 수 있는 자산능력이 있을 것 (자본금 3억원 이상)	가스용품 제조사업	1. 사업소의 부지 및 시설은 자가 소유 또는 임차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 경우는 공증된 사용 승낙서가 있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1.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할 것 2. 안정된 공급과 운용을 위하여 개인의 경우 자산능력이 1억원 이상(법인의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의 재원이 있을 것. 다만, 집단공급사업을 하고 있는 자나 가스판매사업자가 그 사업을 집단공급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1.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할 것 2. 사업소의 부지 및 시설은 자가 소유 또는 임차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 경우는 공증된 사용 승낙서가 있어야 한다.

□ 제　　명 :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 운영 조례

□ 제정사유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와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과 주민복지 향상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등(제1조～제4조)

나.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제5조～제6조)

다.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제7조～제15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정 헌

2023년 9월 27일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1626호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가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와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 운영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복지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3. “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5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에 설치한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수탁자”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 · 운영을 위탁 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하여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완료 이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주요 목표 및 성과
2. 도시쇠퇴 방지 대책
3.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
4. 주민협의체 및 마을공동체 유지 운영 계획
5.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현황분석 및 계획
6. 민간 참여 확대 방안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2.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및 운영 사업
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
5.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장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제7조(기능)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 공간
2. 마을사랑방, 학습·회의 공간, 공연·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들의 문화·여가활동 공간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사업 수행

제8조(운영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관리 · 운영) ①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관리 · 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 · 운영의 전부나 일부를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③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마을공동체 법인 또는 단체"와 해당 정비구역 내 "주민협의체" 또는 "주민자치회"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에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일반입찰의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2. 수의 계약의 경우 최초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관리 · 운영할 때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관리 · 운영에 대한 사항은 시설별 운영계획에 따른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문화발전과 주민의 화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해당시설과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매년 운영계획서,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게 하거나 전대하지 못하며,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그 상당액을 변상해야 한다.

제11조(지도 · 감독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운영상황,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 검사 · 점검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제12조(사용료 등) ①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는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② 구청장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0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2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2. 주민의 건강, 안전 및 이익 보장
3.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
4.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④「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2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천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2.「인천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마을공동체
3.「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주민자치회
4.「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 재생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

제13조(운영비 등) ① 수탁자 및 사용자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부담하고 시설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수탁자 및 사용자의 수입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 및 사용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사용료 면제를 받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을 지역의 일자리 창출, 지역주민의 복리 및 문화혜택증진,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물 등의 설치) 수탁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수탁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자원봉사자) ①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 명 :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사유

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전 및 근골격계 질병 예방을 위하여 종량제 봉투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 원활한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업무를 위하여 대행기간을 변경 및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기준을 상향하여 폐기물 감량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계약 대행기간을 변경함(제8조제2항)

나. 공사장 생활폐기물 마대 판매 제한수량 신설(제9조제3항)

다. 종량제 봉투의 제작을 100리터 미만으로 제한(제13조제2항)

라. 별표 4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및 판매이익에서 가정사업계용 봉투 75리터, 공사장 생활폐기물 마대 30리터 제작 신설 및 사업장생활계용과 모든 종류의 100리터 종량제 봉투를 폐지함(별표 4)

마. 무단투기 근절을 위하여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별표 5)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정 헌

2023년 9월 27일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1627호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3년으로”를 “3년 이내로”로 한다.

제9조제1항제6호가목 중 “봉투”를 “마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사장 생활폐기물 마대는 1인당 10장 미만으로 판매하며, 10장 이상 배출시 수거를 거부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모든 종량제봉투는 100리터 미만으로 제작한다.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판매가격 및 판매이익(제18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종 류	용 량	제작가격	판매이익	판매가격	비 고
일반용 봉투	5ℓ	150	10	160	흰 색
	10ℓ	289	21	310	
	20ℓ	570	50	620	
	50ℓ	1,418	122	1,540	
	75ℓ	2,121	179	2,300	
재사용 봉투	10ℓ	289	21	310	하늘색
	20ℓ	570	50	620	
가정 사업계용 봉투	30ℓ	2,950	270	3,220	황 색
	50ℓ	4,850	440	5,290	
	75ℓ	7,270	660	7,930	
공사장 생활폐기물 마대	30ℓ	1,410	130	1,540	황 색
	60ℓ	2,820	250	3,070	
조개껍데기류 폐기물 마대	60ℓ	3,640	330	3,970	흰 색
대형폐기물 스티커	1,000원권	910	90	1,000	
	5,000원권	4,550	450	5,000	

[별표 5]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22조제2항 관련)

(단위 : 만원)

지 급 항 목	포상지급금액
1. 폐기물의 수집 장소·설비 또는 허가·승인 받은 매립시설 외의 곳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사람(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과태료 부과금액의 20%
나. 간이 보관기구(비닐봉지, 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과태료 부과금액의 50%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된 폐기물을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과태료 부과금액의 50%
라. 차량·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과태료 부과금액의 50%
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축폐기물 등을 말한다)을 버리는 행위(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및 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자, 법 제46조의 폐기물 재생처리를 신고한 사람은 제외한다)	과태료 부과금액의 50%
2. 생활폐기물을 불법·무단 소각하는 행위(법 제8조제2항)	과태료 부과금액의 5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대행) ① (생 략)	제8조(대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수거방식은 문전 수거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고지대 등 차량진입이 어려운 지역은 거점 수거 및 그 밖의 적절한 수거를 병행할 수 있다.	② ----------3년 이내로----------. ----------.
③・④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9조(배출 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배출해야 한다.	제9조(배출 방법)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공사장 생활폐기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배출	6. ----------
가. 공사장 생활폐기물 봉투에 담아 구청 또는 대행업체에 배출일시・배출장소 등을 신고한 후 배출	가. ---------- 마대----------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공사장 생활폐기물 마대는 1인당 10장 미만으로 판매하며, 10장 이상 배출시 수거를 거부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13조(종류・규격 및 용도) ① (생 략)	제13조(종류・규격 및 용도)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모든 종량제봉투는 100리터 미만으로 제작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신·구별표대비표

현 행

판매가격 및 판매이익(제18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종 류	용 량	제작가격	판매이익	판매가격	비 고
일반용 봉 투	5ℓ	150	10	160	흰 색
	10ℓ	289	21	310	
	20ℓ	570	50	620	
	50ℓ	1,418	122	1,540	
	75ℓ	2,121	179	2,300	
	100ℓ	2,821	239	3,060	
재사용 봉 투	10ℓ	289	21	310	하늘색
	20ℓ	570	50	620	
가 정 사업계용 봉 투	30ℓ	2,950	270	3,220	황 색
	50ℓ	4,850	440	5,290	
	100ℓ	9,540	860	10,400	
공 사 장 생활폐기물 마대	60ℓ	2,820	250	3,070	황 색
조개껍데기류 폐기물 마대	60ℓ	3,640	330	3,970	흰 색
	100ℓ	5,960	540	6,500	
사 업 장 생활계용봉투	50ℓ	1,780	160	1,940	흰 색
	100ℓ	3,560	320	3,880	
대형폐기물 스 티 커	1,000원권	910	90	1,000	
	5,000원권	4,550	450	5,000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22조제2항 관련)

(단위 : 만원)

지 급 항 목	포상지급금액
1. 폐기물의 수집 장소·설비 또는 허가·승인 받은 매립시설 외의 곳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사람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과태료 부과금액의 10%
나. 간이 보관기구(비닐봉지, 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과태료 부과금액의 20%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된 폐기물을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과태료 부과금액의 20%
라. 차량·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과태료 부과금액의 20%
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축폐기물 등을 말한다)을 버리는 행위(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및 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자, 법 제46조의 폐기물 재생처리를 신고한 사람은 제외한다)	과태료 부과금액의 20%
2. 생활폐기물을 불법·무단 소각하는 행위(법 제8조제2항)	과태료 부과금액의 20%

개 정 안

판매가격 및 판매이익(제18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종 류	용 량	제작가격	판매이익	판매가격	비 고
일반용 봉 투	5ℓ	150	10	160	흰 색
	10ℓ	289	21	310	
	20ℓ	570	50	620	
	50ℓ	1,418	122	1,540	
	75ℓ	2,121	179	2,300	
재사용 봉 투	10ℓ	289	21	310	하늘색
	20ℓ	570	50	620	
가 정 사업계용 봉 투	30ℓ	2,950	270	3,220	황 색
	50ℓ	4,850	440	5,290	
	75ℓ	7,270	660	7,930	
공 사 장 생활폐기물 마대	30ℓ	1,410	130	1,540	황 색
	60ℓ	2,820	250	3,070	
조개껍데기류 폐기물 마대	60ℓ	3,640	330	3,970	흰 색
대형폐기물 스 티 커	1,000원권	910	90	1,000	
	5,000원권	4,550	450	5,000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22조제2항 관련)

(단위 : 만원)

지 급 항 목	포상지급금액
1. 폐기물의 수집 장소·설비 또는 허가·승인 받은 매립시설 외의 곳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사람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과태료 부과금액의 20%
나. 간이 보관기구(비닐봉지, 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과태료 부과금액의 50%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된 폐기물을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과태료 부과금액의 50%
라. 차량·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과태료 부과금액의 50%
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축폐기물 등을 말한다)을 버리는 행위(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및 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자, 법 제46조의 폐기물 재생처리를 신고한 사람은 제외한다)	과태료 부과금액의 50%
2. 생활폐기물을 불법·무단 소각하는 행위(법 제8조제2항)	과태료 부과금액의 50%

□ 제　　명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사유

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상부도로(인천공항 영업소) 및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통행료를 감면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가 개정되었고

나. 이에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에 해당 사항을 반영하고 조문 체계상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통행료 감면이 시행되는 도로(영업소) 추가(제2조)

나. 지원 대상 지역 명칭을 도서명(島嶼名)에서 법정동으로 정비(제3조)

다.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예산 등 지원 금액 관련 개념 명확화(제4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정 헌

2023년 9월 27일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1628호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과하여 인천을 왕래하는”을 “이용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인천공항 영업소)

제3조 중 “영종도ㆍ용유도ㆍ대무의도ㆍ소무의도ㆍ잠진도ㆍ실미도를”을 “중산동ㆍ운남동ㆍ운북동ㆍ운서동ㆍ을왕동ㆍ남북동ㆍ덕교동ㆍ무의동을”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행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에서 정한 통행료 분담 비율인 100분의 20 중 제3조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실제 이용 비율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행료”란 영종・용유지역 주민이 다음 각 호의 도로를 통과하여 인천을 왕래하는 경우에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2조(정의) ---------- 이용하는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인천공항 영업소)
제3조(지원 대상) 인천광역시 중구(영종도・용유도・대무의도・소무의도・잠진도・실미도를 말한다)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제3조(지원 대상) ---------- 중산동・운남동・운북동・운서동・을왕동・남북동・덕교동・무의동을 ----------.
제4조(지원 금액 등)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역 주민에게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북인천 영업소 통행료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금액 등)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의 통행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에서 정한 통행료 분담 비율인 100분의 20 중 제3조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실제 이용 비율로 정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구청장은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방향 통행료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삭 제>

□ 제　　명 : 인천광역시 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정사유

가. 최근 마약류 및 유해약물과 관련한 사건의 발생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나. 또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사건이 과거 성인에 한정되어 있던 것과는 달리 최근 청소년 등을 비롯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도 발생하고 있어, 아동・청소년기부터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의 보호와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한 실정임

다. 이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과 관련한 사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성인을 비롯한 아동·청소년 등에게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의 필요성을 알리는 한편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제3조)

다. 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시행(제4조～제5조)

라. 홍보(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제7조)

바. 비밀준수의 의무(제8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정 헌

2023년 9월 27일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1629호

인천광역시 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5조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및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필요한 시책

3.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4.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취학아동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사업
2. 초·중·고등학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사업
3. 학교 밖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사업
4.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홍보)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구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교육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는 2024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 제　　명 :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사유

가. 상위 법령인 「지역보건법」개정(법률 제19305호, 2023. 3. 28.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과태료 부과 · 징수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과태료의 부과 · 징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된 조문 현행화(제1조)

나. 과태료의 부과 · 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제3조, 별지서식)

다.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정보의 파기 위반) 신설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별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정 헌

2023년 9월 27일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1630호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을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 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및 감경, 이의신청 등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다.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 합병 전의 처분은 양도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승계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내 용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1.「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역보건법」 제5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600만원	1,200만원	2,400만원
2.「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지역보건법」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1조(목적) -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및 감경, 이의신청 등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신・구별표대비표

현 행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다.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합병전의 처분은 양도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승계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내 용	처분기준		
	1차	2차	3차
1.「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2.「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개 정 안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다.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 합병 전의 처분은 양도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승계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내 용	처분기준		
	1차	2차	3차
1.「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역보건법」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600만원	1,200만원	2,400만원
2.「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제　　명 :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개정사유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중구의회 의원의 여비 지급기준을 명백히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여비에 관한 사항 및 지급기준 규정 추가(제4조)

나.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규정 추가(제5조)

다. 지급제한 규정에 월정수당에 관한 사항 추가(제6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정 헌

2023년 9월 27일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1631호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①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 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의정활동비는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④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의정활동비는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월정수당)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의 지급은 제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4조(여비)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의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다.
③ 의원은 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주일 이내에 운임 및 숙박비의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의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제2조제2항 관련)

지급기준	의 정 활 동 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 조 활 동 비
의원 1인	월 900,000원	월 200,000원

[별표 2]

월정수당 지급기준(제3조제2항 관련)

구 분	지 급 기 준	월 정 수 당
2023년	의 원 1 인	월 2,093,220원
2024년~2026년	의 원 1 인	직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반영 (전년도 월정수당지급액× 보수인상률)

규 칙

❑ 제 명 :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개정사유

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전 및 근골격계 질병 예방을 위하여 종량제 봉투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여 폐기물 감량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및 알기쉬운 용어 사용(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나.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를 확대함(제12조제1항)

다. 별표 2 종량제 봉투의 규격 및 용도에서 가정사업계봉투 75리터를 신설하고 사업장 생활계용 및 100리터 이상의 모든 종량제 봉투 삭제함(별표 2)

라. 별표 4 종량제 봉투 가격산정 기준에서 가정사업계봉투 75리터와 공사장 생활폐기물 마대 30리터 신설 및 사업장생활계용과 모든 종류의 100리터 종량제 봉투를 삭제함(별표 4)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정 헌

2023년 9월 27일

인천광역시 중구 규칙 제1031호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제9조제4항”을 “제9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일”을 “전날”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13조제2항”을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가진”을 “가지거나 직장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구인”으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종량제봉투의 규격 및 용도(제4조제2항 관련)

용량 (L)	치수(㎝) (나비×높이)	높 이(㎝)			묶는 끈(㎝)			두께 (㎜)	인장강도 (N/㎟)	신장율 (%)	노치 후 인열강도		접합 상태	용 도	비고
		폐기물을 담는 부분	묶는 부분	접합가공부분	나비	길이	손잡이끈 폭				보 통 (N/㎜)	접은 곳 (N/㎜)			
2	19×35.5	23.4	11.1	1	4	8	-	0.025	42.1이상	340이상	110.0이상	95.0이상	공기를 넣어 1분간 견딜 것 등	음식물용	
3	22×39.5	26.5	12.0	1	5	9	-	0.025	42.1이상	340이상	110.0이상	95.0이상		음식물용	
									26.5이상	380이상	65.0이상	55.0이상		일반용	
5	36×46.5	32.3	13.2	1	6	10	-	0.030	26.5이상	420이상	70.0이상	60.0이상		일반용, 음식물용	
10	33×56.5	40.0	15.5	1	7	12	-	0.030	26.5이상	420이상	70.0이상	60.0이상		일반용, 음식물용	
	36×53.5	36.0	16.5	1	7	12	5	0.025	42.1	340	110.0	95.0		재사용	
20	45×69.5	50.1	18.4	1	8	15	-	0.035	26.5이상	440이상	70.0이상	60.0이상		일반용, 음식물용	
	45×65.3	45.0	19.3	1	8	15	6	0.030	42.1	360	110.0	95.0		재사용	
30	48×78.5	57.2	20.3	1	10	17	-	0.035	26.5이상	440이상	70.0이상	60.0이상		가정사업계용	
50	56×91.5	67.7	22.8	1	12	19	-	0.045	26.5이상	460이상	75.0이상	70.0이상		일반용, 가정사업계용	
75	65×103.5	76.8	25.7	1	14	21	-	0.050	26.5이상	460이상	75.0이상	70.0이상		일반용, 가정사업계용	

※ HDPE 재질 종량제봉투 기준

※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접합상태 및 그 밖의 상세 규격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다.

[별표 4]

종량제봉투 가격산정 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일반용봉투

봉투가격 = ① ℓ당 처리비용 × 봉투용량(ℓ) × ② 주민부담율 목표치 + ③ 봉투제작비 + ④ 판매이익

주] ① ℓ당 처리비용 = ㉮ 처리비용 ÷ ㉯ 종량제봉투 판매 총 용량

㉮ 처리비용 = 직영처리비 + 위탁처리비 − 대형폐기물처리비용(수수료수입)

○ 직영처리비: 가로청소 등 공공용봉투로 수거된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포함하여 인건비, 차량운영비, 장비구입비, 시설유지비 등을 합산하되 매립장, 소각장 등의 시설 설치비는 감각상각을 고려하여 분할계산

○ 위탁처리비: 대행업체와의 위탁계약금액 또는 대행업체의 봉투판매수입(종량제가 적용되는 다량배출사업자의 위탁처리비용 포함)

㉯ 종량제봉투 판매 총 용량: 연간 판매된 종량제봉투의 총용량

② 주민부담율: 봉투판매금액 ÷ 실제주민배출 폐기물 실 처리비용

③ 봉투제작비: 종량제봉투 용량별 제작단가 적용

④ 판매이익: 9%를 기준으로 적용

※ 판매이익, 봉투제작비의 소수점 단위는 원단위로, 최종판매가격의 원단위는 10원 단위로 반올림한다.

2. (삭제)

3. 가정사업계용봉투

◎ 가정사업계폐기물(생활계유해폐기물)

봉투가격 = [처리단가/kg × 봉투규격(ℓ) + 봉투제작비] × 수수료자립도 + 판매이익

○ 정부고시단가: 225원/kg (발열량 3,000Kcal ~ 5,000Kcal)

② 봉투규격: 30ℓ(12kg ÷ 0.4), 50ℓ(20kg ÷ 0.4), 75ℓ(30kg ÷ 0.4)

③ 환산계수 0.4는 무게단위를 부피단위(ℓ)로 환산하여 봉투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산식

④ 수수료자립도: 가정사업계폐기물 처리비는 처리금액의 100%로 정함

⑤ 봉투제작비는 종량제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말함

⑥ 판매이익: 9%를 기준으로 적용

※ 판매이익, 봉투제작비의 소수점 단위는 원단위로, 최종판매가격의 원단위는 10원 단위로 반올림한다.

◎ 공사장생활폐기물(소규모 건설폐기물)

봉투가격 = [처리단가/kg × 봉투규격(ℓ) × 1.7 + 봉투제작비] × 수수료자립도 + 판매이익

주] ① 처리단가 = (수도권매립지반입료 + 수집운반비)/톤
② 봉투규격: 30ℓ(10kg ÷ 0.4), 60ℓ(20kg ÷ 0.4)
③ 환산계수 1.7은 토사류 비중으로 부피단위를 무게단위로 환산하여 봉투규격을 ℓ로 산정하기 위한 산식
④ 수수료자립도 : 소규모 건설폐기물 처리비는 처리금액의 100%로 정함
⑤ 봉투제작비는 종량제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말함
⑥ 판매이익 : 9%를 기준으로 적용
※ 판매이익, 봉투제작비의 소수점 단위는 원단위로, 최종판매가격의 원단위는 10원 단위로 반올림한다.

4. 조개껍데기류폐기물 봉투

봉투가격 = [처리단가/kg × 봉투규격(ℓ) × 0.25 + 봉투제작비] × 수수료자립도 + 판매이익

주] ① 처리단가 = (소각장반입료 + 수집운반비)/톤
② 봉투규격 : 60ℓ
③ 환산계수 0.25는 조개껍데기 비중으로 부피단위를 무게단위로 환산하여 봉투규격을 ℓ로 산정하기 위한 산식
④ 수수료자립도 : 조개껍데기류폐기물 처리비는 처리금액의 100%로 정함
⑤ 봉투제작비는 종량제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말함
⑥ 판매이익 : 9%를 기준으로 적용
※ 판매이익, 봉투제작비의 소수점 단위는 원단위로, 최종판매가격의 원단위는 10원 단위로 반올림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①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일시 및 장소는 도시미관을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별표 1에 따라 지정된 요일 및 시간에 문전 배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과 공동주택 단지 내에 보관용기가 설치된 지역은 그 용기에 수시로 배출할 수 있다.	제3조(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① --- 제9조제5항----------. -----------.
② 생활폐기물은 청소업체 휴무일인 일요일, 근로자의 날, 설날 및 추석 각각의 해당일과 그 전일에는 배출할 수 없다.	② ---------- 전날----------.
제4조(종량제봉투의 규격 및 용도)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단체표준에 따라 고밀도 폴리에틸렌, 저밀도 폴리에틸렌,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등으로 제작한다.	제4조(종량제봉투의 규격 및 용도) ① -- 제13조제3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포상금의 지급 등) ① 제11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은 구의 관할구역에서 발견된 위법행위 신고자(이 조례에서 “신고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조례 제22조제2항 별표 5에 따라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세부기준에 따른다.	제12조(포상금의 지급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적발일 현재 구에 주소를 가진 사람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2. ---------- 가지거나 직장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구인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구별표대비표

현 행

종량제봉투의 규격 및 용도(제4조제2항 관련)

용량(L)	치수(㎝)(너비×높이)	높이(㎝) 폐기물을 담는 부분	높이(㎝) 묶는 부분	높이(㎝) [illegible]	묶는 끈(㎝) 너비	묶는 끈(㎝) 길이	묶는 끈(㎝) 손잡이 간 폭	두께(㎜)	인장강도(N/㎟)	신장율(%)	노화 후 인열강도 보통(N/㎜)	노화 후 인열강도 접은 곳(N/㎜)	봉합상태	용도	비고
2	19×35.5	23.4	11.1	1	4	8	-	0.025	42.1이상	340이상	110.0이상	95.0이상	공기를 넣어 1분간 견딜 것 등	음식물용	
3	22×39.5	26.5	12.0	1	5	9	-	0.025	42.1이상	340이상	110.0이상	95.0이상		음식물용	
									26.5이상	380이상	65.0이상	55.0이상		일반용	
5	30×46.5	32.3	13.2	1	6	10	-	0.030	26.5이상	420이상	70.0이상	60.0이상		일반용, 음식물용	
10	33×56.5	40.0	15.5	1	7	12	-	0.030	26.5이상	420이상	70.0이상	60.0이상		일반용, 음식물용	
	30×53.5	38.0	16.5	1	7	12	5	0.025	42.1	340	110.0	95.0		재사용	
20	45×69.5	50.1	18.4	1	8	15	-	0.035	26.5이상	440이상	70.0이상	60.0이상		일반용, 음식물용	
	45×65.3	45.0	19.3	1	8	15	6	0.030	42.1	360	110.0	95.0		재사용	
30	48×78.5	57.2	20.3	1	10	17	-	0.035	26.5이상	440이상	70.0이상	60.0이상		가정사업계용	
50	56×91.5	67.7	22.8	1	12	19	-	0.045	26.5이상	460이상	75.0이상	70.0이상		일반용, 가정사업계용, 사업장생활계용	
75	65×103.5	76.8	25.7	1	14	21	-	0.050	26.5이상	460이상	75.0이상	70.0이상		일반용	
100	71×113.5	84.9	27.6	1	15	23	-	0.055	26.5이상	480이상	75.0이상	70.0이상		일반용, 사업장생활계용	

※ HDPE 재질 종량제봉투 기준

※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접합상태 및 그 밖의 상세 규격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다.

종량제봉투 가격산정 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일반용봉투 (생 략)
2. 사업장생활계용봉투

봉투가격 = [(처리단가/ℓ + 수도권매립지반입료) × 봉투규격(ℓ) + 봉투제작비] × 수수료자립도 + 판매이익

주] ① 처리단가: 26.54/ℓ
 ○ 공동주택 처리단가('97년): 66,366원/톤, 1톤 = 2,500ℓ
 ○ 66,366원 ÷ 2,500ℓ = 26.54원/ℓ
② 수도권매립지 반입료('97년 김포매립지 반입료): 8.08원/ℓ
 ○ 20,196원/톤, 1톤 = 2,500ℓ
 ○ 20,196원 ÷ 2,500ℓ = 8.08원/ℓ
③ 봉투규격: 50ℓ(20kg ÷ 0.4), 100ℓ(40kg ÷ 0.4)
④ 환산계수 0.4는 무게단위를 부피단위(ℓ)로 환산하여 봉투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산식
⑤ 수수료자립도: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비는 처리금액의 100%로 정함
⑥ 봉투제작비는 종량제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말함
⑦ 판매이익: 9%를 기준으로 적용
※ 판매이익, 봉투제작비의 소수점 단위는 원단위로, 최종판매가격의 원단위는 10원 단위로 반올림한다.

3. 가정사업계용봉투
 ◎ 가정사업계폐기물(생활계유해폐기물)

봉투가격 = [처리단가/kg × 봉투규격(ℓ) + 봉투제작비] × 수수료자립도 + 판매이익

 ○ 정부고시단가: 225원/kg (발열량 3,000Kcal ~ 5,000Kcal)
② 봉투규격: 30ℓ(12kg ÷ 0.4), 50ℓ(20kg ÷ 0.4), 100ℓ(40kg ÷ 0.4)
③ 환산계수 0.4는 무게단위를 부피단위(ℓ)로 환산하여 봉투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산식
④ 수수료자립도: 가정사업계폐기물 처리비는 처리금액의 100%로 정함
⑤ 봉투제작비는 종량제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말함
⑥ 판매이익: 9%를 기준으로 적용
※ 판매이익, 봉투제작비의 소수점 단위는 원단위로, 최종판매가격의 원단위는 10원 단위로 반올림한다.
 ◎ 공사장생활폐기물(소규모 건설폐기물)

봉투가격 = [처리단가/kg × 봉투규격(ℓ) × 1.7 + 봉투제작비] × 수수료자립도 + 판매이익

주] ① 처리단가 = (수도권매립지반입료 + 수집운반비)/톤
② 봉투규격: 60ℓ(20kg ÷ 0.4)
③ 환산계수 1.7은 토사류 비중으로 부피단위를 무게단위로 환산하여 봉투규격을 ℓ로 산정하기 위한 산식
④ 수수료자립도 : 소규모 건설폐기물 처리비는 처리금액의 100%로 정함
⑤ 봉투제작비는 종량제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말함
⑥ 판매이익 : 9%를 기준으로 적용
※ 판매이익, 봉투제작비의 소수점 단위는 원단위로, 최종판매가격의 원단위는 10원 단위로 반올림한다.

4. 조개껍데기류폐기물 봉투 (생 략)

개 정 안

종량제봉투의 규격 및 용도(제4조제2항 관련)

용량(L)	치수(㎝)(너비×높이)	높이(㎝) 폐기물을 담는 부분	높이(㎝) 묶는 부분	높이(㎝) [illegible]	묶는 끈(㎝) 너비	묶는 끈(㎝) 길이	묶는 끈(㎝) 손잡이 간 폭	두께(㎜)	인장강도(N/㎟)	신장율(%)	노화 후 인열강도 보통(N/㎜)	노화 후 인열강도 접은 곳(N/㎜)	봉합상태	용도	비고
2	19×35.5	23.4	11.1	1	4	8	-	0.025	42.1이상	340이상	110.0이상	95.0이상	공기를 넣어 1분간 견딜 것 등	음식물용	
3	22×39.5	26.5	12.0	1	5	9	-	0.025	42.1이상	340이상	110.0이상	95.0이상		음식물용	
									26.5이상	380이상	65.0이상	55.0이상		일반용	
5	30×46.5	32.3	13.2	1	6	10	-	0.030	26.5이상	420이상	70.0이상	60.0이상		일반용, 음식물용	
10	33×56.5	40.0	15.5	1	7	12	-	0.030	26.5이상	420이상	70.0이상	60.0이상		일반용, 음식물용	
	30×53.5	38.0	16.5	1	7	12	5	0.025	42.1	340	110.0	95.0		재사용	
20	45×69.5	50.1	18.4	1	8	15	-	0.035	26.5이상	440이상	70.0이상	60.0이상		일반용, 음식물용	
	45×65.3	45.0	19.3	1	8	15	6	0.030	42.1	360	110.0	95.0		재사용	
30	48×78.5	57.2	20.3	1	10	17	-	0.035	26.5이상	440이상	70.0이상	60.0이상		가정사업계용	
50	56×91.5	67.7	22.8	1	12	19	-	0.045	26.5이상	460이상	75.0이상	70.0이상		일반용, 가정사업계용	
75	65×103.5	76.8	25.7	1	14	21	-	0.050	26.5이상	460이상	75.0이상	70.0이상		일반용, 가정사업계용	

※ HDPE 재질 종량제봉투 기준

※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접합상태 및 그 밖의 상세 규격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다.

종량제봉투 가격산정 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일반용봉투 (현행과 같음)
2. 〈삭 제〉
3. 가정사업계용봉투
 ◎ 가정사업계폐기물(생활계유해폐기물)

봉투가격 = [처리단가/kg × 봉투규격(ℓ) + 봉투제작비] × 수수료자립도 + 판매이익

 ○ 정부고시단가: 225원/kg (발열량 3,000Kcal ~ 5,000Kcal)
② 봉투규격: 30ℓ(12kg ÷ 0.4), 50ℓ(20kg ÷ 0.4), 75ℓ(30kg ÷ 0.4)
③ 환산계수 0.4는 무게단위를 부피단위(ℓ)로 환산하여 봉투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산식
④ 수수료자립도: 가정사업계폐기물 처리비는 처리금액의 100%로 정함
⑤ 봉투제작비는 종량제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말함
⑥ 판매이익: 9%를 기준으로 적용
※ 판매이익, 봉투제작비의 소수점 단위는 원단위로, 최종판매가격의 원단위는 10원 단위로 반올림한다.
 ◎ 공사장생활폐기물(소규모 건설폐기물)

봉투가격 = [처리단가/kg × 봉투규격(ℓ) × 1.7 + 봉투제작비] × 수수료자립도 + 판매이익

주] ① 처리단가 = (수도권매립지반입료 + 수집운반비)/톤
② 봉투규격: 30ℓ(10kg ÷ 0.4), 60ℓ(20kg ÷ 0.4)
③ 환산계수 1.7은 토사류 비중으로 부피단위를 무게단위로 환산하여 봉투규격을 ℓ로 산정하기 위한 산식
④ 수수료자립도 : 소규모 건설폐기물 처리비는 처리금액의 100%로 정함
⑤ 봉투제작비는 종량제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말함
⑥ 판매이익 : 9%를 기준으로 적용
※ 판매이익, 봉투제작비의 소수점 단위는 원단위로, 최종판매가격의 원단위는 10원 단위로 반올림한다.

4. 조개껍데기류폐기물 봉투 (현행과 같음)

훈 령

❑ 제 명 : 인천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동협의회 운영 규정

❑ 제정사유

인천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동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협의회 기능(제2조)

1)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2) 지역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정책 제안

나. 구성 및 임기(제3조)

1)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2) 임기는 2년으로 함

다. 회의소집 및 운영(제5조)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

2)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청취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해 의견제출 요청할 수 있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동협의회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정 헌

2023년 9월 27일

인천광역시 중구 훈령 제407호

인천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동협의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구민이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동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지속가능발전동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 집약하는 활동
2. 지역의 경제적 · 사회적 · 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정책 제안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동별로 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고, 간사는 해당 동 주무담당으로 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단, 인천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속하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2.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시민사회단체, 교육계, 학계, 경제계 등의 소속 임직원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회의소집 및 운영)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기관 ·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 규

❑ 제 명 : 인천광역시 중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 제정사유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기관 비공무원 채용 기준 규정 권고

나. 비공무원 채용과 관련한 '공통 기준' 마련으로 형평성 및 공정성 확보

❑ 주요내용

가.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나.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법 및 근거마련(제23조)

다. 비공무원 채용절차 관련 표준 양식관련(별지 서식)

인천광역시 중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정 헌

2023년 9월 27일

인천광역시 중구 예규 제107호

인천광역시 중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 중구 본청, 소속기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그 밖의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근로자”란「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 채용권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를 말한다.
3. “채용권자”란 근로자의 채용·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인천광역시 중구 본청, 소속기관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의 장을 말한다.
4.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5. “부정합격자”란 제2조제1호에 따른 채용비리로 합격하였거나,「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행위로 합격한 자를 말한다.

6. “대체인력”이란,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인력으로서 별도 정원을 활용한 충원 또는 별도 정원 충원 없이 대체인력뱅크에서의 임용을 통해 활용되는 자를 말한다.
7. “대체인력뱅크”란 결원이 예상되는 직위의 업무 대행을 위해 업무성격에 따라 적합한 인력을 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확보하여 구성한 인력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 중구 본청, 소속기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근로자의 신규채용에 적용한다.
②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인천광역시 중구가 정하는 조례 및 규칙 등에서 특별히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른다.

제2장 채용

제4조(채용원칙) ① 근로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성별, 신체조건, 용모, 학력, 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 특성상 전문인력이나 지역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국가유공자 · 장애인 · 여성 · 저소득층 ·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 · 고령자 및 준고령자 등에 대한 사회형평적 채용이 필요한 경우 채용권자는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있다. 제한경쟁방식으로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 직종별 · 직급별 응시자격은 별지 제5호서식을 따르며, 별지 제5호서식에 해당하지 않는 응시자격이 요구되는 경우 채용부서 내부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보훈특별고용 등 관련 법률에 의한 특별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채용권자는 채용과정 전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내용에 기반을 둔 능력중심의 채용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⑤ 채용권자는 서류심사 기준 다양화, 직무능력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필기 · 면접시험등을 도입하여 해당 직위·직무에 적합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채용권자는 인사운영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당 연도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시험방법 등 채용내용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공개할 수 있다.

제5조(채용담당부서의 의무) ① 채용담당부서는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하도록 채용계획을 수립하거나, 공고내용을 변경하는 등 채용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 · 간접적으로 관여한 자는 응시 원서, 필기 문제,

면접 과제 등 전형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되며, 검수·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관하고 있는 시설 내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외부 채용대행업체에 채용 대행을 맡기는 경우 해당 전형일 전에 필기 문제, 면접 과제 등의 사전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검수·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업체 내부에서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채용절차 등)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채용계획 수립 및 채용공고 후 다음 각 호의 시험방식으로 채용하되, 이 중 제1호와 제5호의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다만, 원활한 인력 수급 등을 이유로 별도의 자체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
1. 서류전형
2. 필기시험
3. 인·적성검사
4. 실기시험(체력검정 포함)
5. 면접전형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체력검정의 경우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합리적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다른 인증제도 등을 활용하여 체력검정을 대체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인성·적성검사의 결과를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채용계획 수립 등) ① 근로자의 채용수요가 발생한 부서에서는 채용계획 수립을 하기 전에 인사부서에 채용목적, 채용인원, 채용절차 및 기준 등 채용 전반에 대한 주요 사항을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채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채용담당 부서는 근로자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모집단위, 지원자격, 채용조건, 전형단계별 평가방법, 선발배수, 우대사항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인천광역시 중구와 소속기관 등의 하부기관 등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채용절차와 전형방식 등을 채용 담당부서가 직접 관리하되, 별도로 채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채용 방법과 절차 등을 사전에 명확히 규정하고 채용 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제8조(채용공고) ①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채용권자는 기관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원서접수 마감일의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 채용분야별 채용 예정 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보수 및 계약기간 등
2. 채용서류의 접수에 관한 사항
3. 채용서류의 보관기간 및 반환에 관한 사항
4. 응시원서 교부 및 서류접수 일정
5. 전형시기 및 방법(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6. 합격자 발표 시기 및 방법
7.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신속하게 공고하여야 하며, 늦어도 원서접수 마감일의 3일 전까지 그 변경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단순한 오류 사항의 정정 등 그 공고의 변경이 응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는 경우 기존 공고 기간대로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채용공고절차에 관하여 5일 이상 게시하되,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공고 기간을 3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

1. 휴직·파견·퇴직·해고 등에 의한 결원 발생으로 6개월 이하의 기간제·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채용권자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할 인력을 긴급하게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

⑤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제1항의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고용노동부 위크넷 구인 등록자를 채용하는 경우
2.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추천, 채용정보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3. 3회 이상 채용공고를 하였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
4. 기관 기능의 정상적 수행이 불가능한 비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

⑥ 채용권자는 응시원서를 접수한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다.

⑦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응시자의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신체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고용부서가 부담해야 한다.

제9조(대체인력뱅크의 구성) ① 채용권자는 제8조제3항제1호와 같은 사유의 발생으로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소속기관 내부에 대체인력뱅크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채용권자는 대체인력뱅크를 구성하기 위하여 지역, 직무, 직급 등을 고려하여 적정 인원을 구분하여 모집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대체인력의 임용) 채용권자는 제8조제3항제1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통합 대체인력뱅크 또는 소속기관 대체인력뱅크 중에서 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대체 인력을 임용할 수 있다.

제11조(심사위원 선정 등) ① 채용권자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출제 및 채점, 실기시험, 면접시험,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심사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내부·외부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과 자문변호사 등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밖에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사실상 내부위원으로 간주 될 수 있는 사람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각 전형별 심사위원 3분의 1 이상을 다른 공공기관 소속 직원 또는 민간인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전형에서 응시요건의 적격여부만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 전형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9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면접전형에 1인 이상의 외부위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심사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위원의 제척 · 회피 등)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응시자와 친족관계, 근무경험 관계, 교우, 동료관계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사람
2. 제1호를 위반하여 위원을 한 사실이 있거나 채용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인적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해당 시험을 주관하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 및 시험주관 부서장 및 담당자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채용권자는 심사위원에게 회피의무를 안내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위원 서약서를 징구해야 하며, 위원 스스로가 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채용담당자는 소속 부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장에서 이해관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회피 신청을 하고, 그 이해관계자에 한정하여 심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④ 응시자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심사위원에 대하여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채용권자는 이를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위원을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 채용부서는 제11조제4항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명단을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험위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채용권자는 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인천광역시 중구 근로자의 채용 심사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제13조(원서접수) ① 근로자의 채용에 접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채용에 접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응시원서
2. 자기소개서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4. 그 밖에 채용공고 시 제출을 요구한 서류
② 채용권자는 채용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다. 다만,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해당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 · 키 ·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 · 혼인여부 · 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 직업 · 재산

제14조(서류전형) ① 서류전형은 당해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 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② 서류전형의 심사기준, 평정 항목, 배점 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해당 근로자 채용계획에 따른다.
③ 채용부서의 장은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다음 전형의 일시 · 장소, 응시자 주의사항 등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15조(필기전형 등) ① 채용예정직위에 부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기전형 및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필기전형의 시험 범위, 시험 과목, 문항 수,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해당 근로자 채용계획에 따른다.
③ 실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채용계획 수립 시 결정한 실기시험 전형기준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합격자 확정, 합격자 발표 방법은 해당 근로자 채용계획에 따른다.

제16조(면접전형) ① 면접전형은 서류전형 합격자(필기시험 · 실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필기시험 · 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② 면접전형의 평정 항목, 배점 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해당 근로자 채용계획에 따른다.

③ 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사전에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④ 채용권자는 면접위원에게 제3항을 포함한 면접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 ① 채용시험에 있어서 각 전형 단계별로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법정가점을 부여한다. 단,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법정가점을 받는 「국가유공자법」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점자처리기준은 해당 근로자 채용부서의 내부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④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상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을 반영하여 응시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18조(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① 최종합격자 결정 기준은 해당 근로자 채용계획에 따른다.

② 채용권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 · 우대요건 등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하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채용권자는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을 대비하여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내(소수점 이하는 1명)에서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다. 다만, 예비합격자 규모는 채용계획 수립 시 채용부서 내부 심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예비합격자의 임용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로 하되, 해당 분야의 다음 채용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합격자 규모와 임용 유효기간은 채용부서 내부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채용점검위원회의 운영) ① 채용권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채용방식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② 채용점검위원회는 채용을 담당한 부서장 및 담당자를 제외하고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채용의 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채용권자는 충실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채용시험 실시 등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채용권자는 합격자 발표를 하고,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 결과를 발표할 수 있으며,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채용결격사유) ① 근로자의 채용 결격사유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직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의 결격사유에 따른다.

② 채용권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신규 채용시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별지 제17호서식을 징구하고 확인해야 한다.

제21조(채용공정성관리) ① 채용권자는 감사부서의 장이나 직원 또는 감사부서의 장의 권한을 대리하는 입회담당자를 채용계획 수립, 서류 및 면접전형 등에 참관시킬 수 있다.

② 감사부서는 채용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채용과 관련된 서류를 감사 권한의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제22조(합격취소 등)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의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
3.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사람
4. 그 밖에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②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상에 제1항의 부정합격자 합격취소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부터 부정합격 시 해당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23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①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이 진행하며, 그 밖에 구체적인 구제 방안 등은 채용비리 발생 시 채용권자가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 후 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통하여 확정한다.

제24조(채용 구비서류)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갖추어야 할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1. 응시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5. 결격사유 서약서 1부
6. 최종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7.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25조(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 ① 채용과 관련된 문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기간을 정한다. 다만 해당 법에 따라 별도로 보존하기로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지원자 성명 및 연락처(전화, 전자우편주소 등)에 관한 정보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직 ·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문(예시)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직 ·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0000-00호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채 용 권 자 명

1. 채용 개요

연번	채용 분야	선발예정인원	계약기간	근무지
1	공무직 (사무원)	1명	계약체결일 ~ 정년(무기계약직)	00과 (◇◇동)
2	기간제 (시설관리)	1명	계약체결일 ~ 00.00.00.(0개월)	●●소 (◆◆동)
3	기간제 (운전원)	1명	계약체결일 ~ 00.00.00.(0개월)	◎◎팀 (□□동)

※ 이번 채용 중 기간제근로자(연번 2,3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님

※ 채용 분야(연번) 중 1개만 선택하여 지원 가능하며, 중복 지원 시 모두 불합격 처리

※ 계약체결일은 예정일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간제근로자 채용(연번 2, 3번)은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계약기간 만료일은 휴직자 조기 복직 등 기관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공통 자격

○ 00세 이상인 자로(00.00.00. 이전 출생자) 공고일(00.00.00.) 기준 인사관리 규정상 정년(0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상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응시 자격 및 우대사항

구분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공무직 (사무원)	- (응시자격) 공통 자격 外 응시자격 제한 없음 - (우대사항)「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사무' 분야의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소지자(서류전형만 해당)
기간제 (시설관리)	- (응시자격) 관련 분야 산업기사 이상이면서, 자격취득 이후 해당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기간제 (운전원)	- (응시자격)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 1. 1종 대형면허 소지자로서, 자격취득 후 대형승합차 경력 1년 이상인 자 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인 자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0000.00.00.예정) 기준으로 판단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에 제시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만 인정(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가점 사항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구분		부가 점수
법정 가점	「국가유공자법」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 별 만점의 5~10%
사회 형평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단, 법정가점은 취업지원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함

3. 채용 절차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결정
00.00.00(O) ~00.00.00(O)		00.00.00(O) ~00.00.00(O)		(발표일) 00.00.00(O)		(발표일) 00.00.00(O)		(발표일) 00.00.00(O)

○ 서류전형 방법

채용분야	내용
공무직 (사무원)	○ 적극적 서류전형(10배수) 계: 100점 + 가점 평가점수: 지원분야 경력 30, 지원분야 적합성(자기소개서 등) 60, 우대사항(자격증) 10 가점(사회형평): 3 - 가산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서류 전형 평가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대상 선발인원 : 10명 -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합격자 배수 초과 가능) - 서류전형 결과(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 00.00.00(O) 홈페이지 공고

채용분야	내용
기간제 (시설관리)	○ 소극적 서류전형(자격요건 적격자 전원 통과) ※ 단,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① 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하는 등 의미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② 자기소개서 항목당 허용 글자 수의 30%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 ③ 기타 ① ~ ②의 사유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의 경우는 탈락처리 - 서류전형 결과(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 00.00.00(O)
기간제 (운전원)	

○ 면접전형 방법

채용분야	내용
공무직 (사무원)	○ 평정요소를 상(10점), 중(6점), 하(2점)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 평정요소 : 1. 근로자로서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 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했을 때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 서류전형 성적 순으로 결정 * 상기 기준으로도 합격자 결정이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결정
기간제 (시설관리)	
기간제 (운전원)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채용분야	최종합격자	예비합격자(운영기한)
공무직(사무원)	1명	1명(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기간제(시설관리)	1명	3명(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기간제(운전원)	1명	3명(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우대사항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
  ※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합격 또는 임용 취소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
-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단,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 기간제(운전원)의 경우는 근무 기간이 9개월 미만임에 따라 예비합격자 운영 기한을 3개월로 단축

4. 전형 일정

구분	일정	비고
채용공고 기간	00.00.00.(O) 09:00~ 00.00.00.(O) 18:00	인천 중구청 홈페이지, 워크넷 등
원서접수 기간	00.00.00.(O) 09:00~ 00.00.00.(O) 18:00	E-mail 및 등기우편 접수
서류전형	00.00.00.(O)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00.00.00.(O)	인천 중구청 홈페이지 공고 (개별 별도 통보 없음)
면접전형	00.00.00.(O)	
최종합격자 발표일	00.00.00.(O)	인천 중구청 홈페이지 공고 (개별 별도 통보 없음)
채용 예정일	00.00.00.(O)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무 개시

※ 전형 일정은 증빙서류 검증 소요시간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된 일정은 인천광역시 중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공지 예정)

5.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원서 접수 기간 : 00.00.00.(O) 09:00~ 00.00.00.(O) 18:00

○ 원서 접수 방법 :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 접수기간 마감일 18:00까지 메일도착분(등기우편 포함)에 한하여 유효함

- 등기우편 접수 주소 : (우편주소)
-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주소 : @korea.kr

○ 응시자 제출서류

<table>
<tr><th>제출시기</th><th>제출서류</th></tr>
<tr><td>원서접수 시</td><td>- 입사지원서(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공고 상 붙임의 양식이 아닌 별도 양식 등으로 제출할 시 불합격 처리</td></tr>
<tr><td>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 면접전형 당일</td><td>
<table>
<tr><th>구분</th><th>제출대상</th><th>제출서류</th></tr>
<tr><td rowspan="2">공통</td><td>합격자 전원</td><td>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사본 1부</td></tr>
<tr><td>가점 대상자</td><td>① 법정가점(취업지원 가점) 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② 사회형평 가점 대상자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1부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 다문화가족 : 다음의 증빙서류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배우자(귀화 허가를 받은 자) 명의의 기본증명서
(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td></tr>
</table>
</td></tr>
</table>

<table>
<tr><th>제출시기</th><th>제출서류</th></tr>
<tr><td></td><td>
<table>
<tr><th>구분</th><th>제출대상</th><th>제출서류</th></tr>
<tr><td></td><td></td><td>·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결혼이민자)
③ 자격가점 대상자 : 관련 자격증 사본 제출</td></tr>
<tr><td>공무직
(사무원)</td><td>우대사항 대상자</td><td>우대사항 관련 자격증 사본 제출</td></tr>
<tr><td>기간제
(시설관리)</td><td>합격자 전원</td><td>응시자격 관련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td></tr>
<tr><td>기간제
(운전원)</td><td>합격자 전원</td><td>응시자격 관련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td></tr>
</table>
</td></tr>
<tr><td>최종합격자 발표 후</td><td>-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공정채용 확인서, 채용신체검사서,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등
※ 구체적인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는 발표 후 별도 안내 예정</td></tr>
</table>

※ 응시자 제출서류는 증빙서류 검증 과정에서 필요 시 일부 추가 요구 등 변동 가능

※ 심사에 불필요한 증빙서류(자격 · 우대사항 증빙서류 등)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6. 근무조건 등

채용 분야	계약기간	근무지	근무시간	보수
공무직 (사무원)	계약체결일 ~ 정년 (무기계약직)	OO과 (◇◇동)	1일 8시간, 주5일 근무	인사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한 보수 기재
기간제 (시설관리)	계약체결일 ~ 00.00.00. (0개월)	●●소 (◆◆동)		
기간제 (운전원)	계약체결일 ~ 00.00.00. (0개월)	◎◎팀 (□□동)		

※ 기타 복지후생 등 그 외의 사항은「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및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칙」등 관련 규정에 따름

7. 유의사항

□ **채용서류 반환 관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에 별지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채용절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한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함

○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 단, 인사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

□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표준기준 제23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 기타 유의사항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입사지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등),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됨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조회, 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입사지원서는 접수 마감기한('00.00.00.( ) 18시)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

○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 기타 관련 문의 사항은 채용담당자(000-000-0000)에게 문의

<별지 제2호> 공무직근로자등 입사지원서 (예시)
* 본 서식은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입 사 지 원 서

1. 공통사항				
지원분야			접수번호	< 미기재 >
성명	(한글)			
연락처	(본인휴대폰)	전자 우편		
	(비상연락처)			
생일	< 심사위원에게 미제공(당사자 확인용으로만 활용) > * 출생년도는 미기재			
주소	< 심사위원에게 미제공(당사자 확인용으로만 활용) >			
지원 자격 여부	(채용계획에서 정한 지원분야에 대한 내용을 작성) □ <지원분야 1>, □ <지원분야 2>, □ <지원분야 3>			
우대 사항 여부	(채용계획에서 정한 우대사항에 대한 내용을 작성) □ <우대사항 1>, □ <우대사항 2>, □ <우대사항 3>			
가점 사항 여부	□ 취업지원 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비율	□ 5% □ 10%	
	□ 장애인, □ 저소득층, □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			

2. 응시자격사항(채용계획에서 정한 응시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 - 필요 없을 시 삭제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경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3. 우대사항(채용계획에서 정한 우대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 - 필요 없을 시 삭제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한국사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시행기관

※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XX년 월 일

성 명 : (인)

<별지 제3호> 심사위원 서약서(예시) * 본 서식은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관련문서	○○○○과-0000호		
채용구분	[ ]공무직 [ ] 기간제	전형구분	[ ] 서류전형 [ ] 면접전형

서 약 서

본인은 OOOO **근로자 채용 심사위원**으로 위촉(임명)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심사위원으로 위촉(임명)된 사실을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누설하지 않는다.
2. 심사과정에 있었던 일에 대한 일체의 사실에 대하여 누설하지 않는다.
3. 응시자와의 친인척관계 등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의 회피를 신청한다.
4. 그 밖에 공정한 시험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본인은 위 사실을 고의로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향후 인천광역시 중구의 심사위원 자격이 제한되는 것에 동의하며, 제반 보안사항 유출 등 채용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 **귀하**

<별지 제4호> 기피 · 회피사유서(예시) * 본 서식은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채용 심사위원 기피(회피)사유서

□ 채용부서 :

□ 채용분야 :

□ 기피(회피)대상자 : 명

수험번호	성명	생년월일	사유

□ 기피(회피) 사유

○ 해당 응시자는 심사위원과 학연, 지연, 혈연 등 사유에 해당하여, 공정한 채용을 위하여 해당 응시자의 평정에 참여하지 않음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제5호> 응시자격 기준표(예시) * 본 서식은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 자격증 · 경력을 요하는 제한경쟁채용(예시)

구분	자격기준
시설관리	관련분야 산업기사 이상이면서, 자격취득 이후 해당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운전원	1종 대형면허 소지자로서, 자격 취득 후 대형승합차 경력 1년 이상인 자
조리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중 직무분야 “조리”의 조리 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사무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사무’분야의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소지자

□ 사회형평적 인력운용을 위한 제한경쟁채용(예시)

구분	자격기준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법」 제29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다문화가족

<별지 제6호>서류심사 채점표(예시) * 본 서식은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근로자 채용 서류심사 채점표

계약형태	공무직/기간제	직 종		응시번호	
성 명					

필수요건 구비여부	○ 제출서류 구비 및 양식 준수 여부	여 / 부
	○ 응시자격요건 부합여부	여 / 부

구 분	세부기준	배 점	평가점수
지원분야 경력 (30점)	◦ 경력없음 ~ 1년 미만	10	
	◦ 1년이상 ~ 2년미만	20	
	◦ 2년이상	30	
지원분야 자격증 (10점)	◦ 산업기사, 기능사 등	5	
	◦ 기술사, 기사 등	10	
지원분야 적합성 (60점)	◦ 소통 · 화합 능력 ◦ 업무처리 및 문제해결 능력 ◦ 추진력, 업무성취 경험 ◦ 성실성 · 책임감 ◦ 지원동기, 청에대한 이해	60	
계(100점)			
감점	◦블라인드 채용 위반 (학력, 출신지, 성명 등 기재)	-10	
	◦관련 양식 미준수 제출	-10	
가점	국가유공자 등 개별법에 따름(세부기준)	3, 5, 10	
합계			

특이사항	*			
채점일	20 . . .	채점자	직 급	
			성 명	(서명)

<별지 제7호> 서류심사 집계표(예시) * 본 서식은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공무직/기간제근로자 채용 서류심사 집계표

□ 근무부서 :

□ 모집단위 :

□ 채용인원 : 명 (응시인원 명)

응시번호	성 명	자격요건 구비여부	채점결과		합계	평균	순위
			심사위원 A	심사위원 B			

시험위원 확인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별지 제8호> 면접시험 유의사항 안내문(예시)

* 본 서식은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면접시험 진행 중 유의사항(공통)
○ 응시자가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 언급 시 발언 제지 * 친·인척 중 유명 인사나 고위직이 있다거나, 본인에게 유리한 성장배경, 가족관계, 사회경력 등의 의도적 전달행위 * 시험에 탈락한 경험 등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행위 ○ 응시자에 따라 차별적 소지가 있는 질문은 삼가 * 성별, 연령(학번 포함), 학력(학위소지), 출신지역, 병역, 결혼여부 등 ○ 정치적인 견해나 태도 등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질문은 하지 않아야 함 ○ 응시자를 무시하거나 권위적·고압적인 발언 등으로 품위를 잃는 일이 없도록 언행에 주의 ○ 면접시간 중 화장실 출입, 휴대전화 사용, 졸음 등은 수험생 주요민원 제기 요인이므로 유의 ※ 시험보안관계 상 중식시간 등 시험실을 비우는 시간대는 일체의 면접 관련 서류를 심사위원 회의장으로 가지고 오시기 바람 ※ 면접종료 후에는 모든 면접자료를 시험시행본부에 반납하여야 함

<별지 제9호> 면접 표준질문서(예시) * 본 서식은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구분	중점평가항목	질문 및 검토사항 예시
1.공무직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 직업의식 - 청렴성 - 우리 기관에 대한 기대 - 근무지속성	- 0000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 1분 자기소개를 해보시오. - 평소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이미지는? - 자신이 공직에 와서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000소속 공무직의 자세는? - 0000의 업무내용에 대하여 아는 대로 얘기해 보시고, 평소 가졌던 생각은? - 지금까지의 좋은 직장을 그만둘 정도의 결정을 하게 된 계기는? - 공공기관과 사기업의 차이를 말해보세요.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보세요.
2.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전공에 필요한 전문지식 - 교양지식	- 본인만이 갖고 있는 차별화된 전문분야 및 특징은? - 본인이 가장 내세울 만한 업무실적은? 그 이유는? - 예정부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험과 지식 또는 기술은 무엇이라고 생각? - 관련 영역에서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 선발 후 우리 부서에서 하고 싶은 업무는? 그 분야에 대해 남들과 차별화된 전문성은?
3.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논리의 전개방식 - 핵심의 접근방법	- 자기소개 또는 3분 스피치 후 평가 - 발표 내용의 논리정연성 판단
4.예의, 품행 및 성실성	- 성실도 - 복장 - 자세	- 지금까지 제일 견디기 힘들었던 일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 본인이 지금까지 한 일중 가장 자랑스러운 일은? -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이유는? - 자신의 발전을 위해 투자하고 있는 게 있다면? - 단체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 가장 싫어하는 사람 유형은 무엇인가요? -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사와 의견충돌이 있다면?
5.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미래지향성 - 진취성 - 대인관계	-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여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례는? - 지금까지 성과를 얻은 것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 본인은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상급자가 본인을 신뢰하고 자주 일을 맡긴다. 반면 다른 동료는 일을 제한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해 상급자가 본인에게 업무를 과중하게 지시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를 때 어떻게 대처? - 획기적으로 발상을 전환하여 일을 처리한 경험은? - 봉급이 박봉인데 생활할 수 있나요? - 장래에 대한 계획 및 포부는?

<별지 제10호> 면접시험 평정표(예시) * 본 서식은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근로자 채용 면접시험 평정표

필기적감정용	(예시문) 본인은 아래 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채용직종	
재란	본인필적	응시부서	○○○○과
성 명		수험번호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평정점수	평가등급		
		상(10점)	중(6점)	하(2점)
가. 공무직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10점)				
나. 전문지식과 응용능력(10점)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10점)				
라. 예의 품행 및 성실성(10점)				
마. 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10점)				
점 수 합 계				
위 원 서 명	성명 (서명)			

※ 유의사항

- 합격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결정. 단,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했을 때에는 1순위라 하더라도 불합격으로 결정한다.

<별지 제11호> 면접시험 집계표(예시) * 본 서식은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근로자 채용 면접시험 집계표

응시분야	공무직 (ㅇㅇㅇㅇㅇ)	채용예정기관	○○○○○

수험번호	성 명	심사위원 점수						가·감점	총계	순위
		1위원	2위원	3위원	합계	평균	합·불			

시험위원 확인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별지 제12호> 면접시험 결정서(예시) * 본 서식은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근로자 채용 면접시험 결정서

공무직/기간제 (○○○○○) 면접시험 평정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합격자 및 추가합격 대상자 순위를 선정하였음을 확인함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 합격자

순 위	수험번호	성 명	평정점수	비 고
1				

○ 예비합격 대상자 명부

순 위	수험번호	성 명	평정점수	비 고
1				
2				
3				
4				

20 년 월 일

○○○○○ 귀하

<별지 제13호> 채용시험 가점기준(예시) * 본 서식은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구 분		부가점수
법정 가점	「국가유공자법」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법령에 따라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사회 형평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단, 법정가점은 취업보호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함

<별지 제14호> 채용 후보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예시)

* 본 서식은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은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ㅇㅇㅇㅇㅇ장 귀하

<별지 제15호>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예시)
* 본 서식은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OOOO 공무직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표준기준제20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ㅇㅇㅇㅇㅇ장 귀하

<별지 제16호> 채용서류 반환청구서(표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 취업제한 체크리스트(예시) * 본 서식은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해당 □ 비해당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	해당 □ 비해당 □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 · 파면 · 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	해당 □ 비해당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해당 □ 비해당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해당 □ 비해당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1호)	해당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2호)	해당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 년 월 일

생년월일 . . . 지 원 자 (서명)

년 월 일

<별지 제18호>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표준)

* 본 서식은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 **피해자**: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자

①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가능 시**)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예: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 **필기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
- **서류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필기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불가 시**)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 예: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
- **필기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필기시험 재실시**
- **서류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서류시험 재실시**

② **부정합격자 확정·퇴출 前이라도 우선 시행**

▪ 필요시 한시적으로 정원외 인력으로 허용

고 시

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3-22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하고, 같은 법 제8조 제6항과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내역

허가번호	허가일	위치	면적(㎡)	목적	피허가자 (성명 및 주소)	기간
제2022-1호	2023. 9.14	중구 항동7가 1-12	662.25㎡	주차장, 화단, 민원인 휴게공간, 전기차 충전시설, 대형차 전용 주차공간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393)	2022.11.08. ~2027.11.07. (5년)

2023년 9월 27일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공 고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3-1518호

빈집 해체 명령 공고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제11조(빈집의 철거 등)의 규정에 따라 빈집의 정비를 요구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빈집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직권 철거하게 됨을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무허가 빈집(폐·공가) 해체 명령 및 직권 해체 예고
2. **공고기간** : 2023. 09. 27. ~ 2023. 10. 10. (14일간)
3. **공고장소** : 시·군·구보, 게시판, 홈페이지, 신문공고
4. **공시송달 대상**

순번	관리번호	소재지	소유자	건축물 현황				건축물 사진
				층	구조	용도	면적(㎡)	
1		율목동 250-26	"미상"	0/1	시멘블럭조	단독주택	약22.0	

5. **유의사항**
   가.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인천시 중구 건축과 건축팀(☎032-760-74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의견 제출서 및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부. 끝.

2023. 9. 27.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